

『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2015년 7월 1일부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변경 :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
-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한 ‘제2장 여성시책’을 남녀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등의 ‘양성평등시책’으로 변경(안 제4조 ~ 안 제18조)
-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(안 제19조 ~ 안 제21조)
-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(안 제30조)
-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31조)
-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 관련 추가(안 제33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명을 「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」에서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하였고,
- 기존 조례 제2장 “여성시책”을 “양성평등시책”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, 공직참여의 촉진, 의식제고, 복지증진, 경제활동 지원 등을 강구토록 하였으며,
- 안 제19조에서 제29조까지 제3장에서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구미시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.
- 아울러, 제4장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, 존속기한, 운영관리,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사회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자는

취지로 1995년 제정된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20년 만에 전부 개정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